

의안번호	제 19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12월 21일 (제 266 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2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	-----

제출연월일 : 2007년 12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에 명시하며
-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고
-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 안제9조의2)
 -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 ※ 종전에는 「충청북도 도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 1가구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안 제12조제3항)
 - 40㎡이하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60세이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를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으로 하며,

제8조제6호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으로 하고,

제8조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9조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 중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고 “신규등록·이
전등록 및” 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을 “무역을 하는” 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를 “주택건설사업자” 로 하고,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며, “주택법 제10조제3항”
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면한다” 를 “면제한다” 로 하고 “감면된” 을 “면제된”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을 “부양
하고 있는 자는” 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최초 시행인가일” 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동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하
며, 같은 조제2호 중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을 “정비구역지
정 고시일”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동산” 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로 한
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로 하고, “민간출자분” 을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 으로 하며, “법인등기” 는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 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제1항에서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21조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생략)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

1. ~ 4.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

<신설>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같은 법 시행령-----

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무역을 하는 -----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 같은 법시행령-----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

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 1. ~ 2. (생략)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 1.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 2. 동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

-----.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

제곱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5. 고급선박 :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6. 삭제 <2000.12.29>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과학관육성법

제6조 (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